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2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김예지 · 임종득 · 김상훈
고동진 · 정성국 · 박덕흠
이소희 · 최수진 · 김용태
신성범 · 김소희 · 이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음. 특히 제1·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군 영웅들을 마땅히 예우하기 위해 국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대군인이 어디서나 적

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3년마다 실시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자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제대군인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0조제5항 신설 및 제20조의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등에”를 “, 정신건강 등에”로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을 요청한 제대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그”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 ----- -----, <u>정신건강 등에</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료 지원) ① ~ ④ (생 략)	제20조(의료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u>

⑤ (생략)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을 요청한 제대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u>내용</u> <u>· 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서비스</u> ② -----<u>방법</u>- ----- -----.
--	--